

환경법 개정법률안 모음

◎환경부공고 제2008-70호

「수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6월 30일부터 적용 예정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정확과 통일을 기하고 해당기준에 적합한 자재 및 제품의 적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생안전기준의 세부적인 내용 및 시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2. 주요내용

가. 위생안전기준의 세부적인 내용 및 시험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환경부공고 제2008-5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폐기물사업자가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각종 신고 또는 확인서류와 보고서 등을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여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613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보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를 구체화하여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1) 현행은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배출자의 신고·확인 및 변경신고·확인사항, 폐기물 수출입 신고 및 변경 신고 서류,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및 폐기물처리업 변경 신고 서류,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 및 변경 승인·신고 서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의 장부 기록, 폐기물의 발생·처리·재활용 보고서 등을 문서로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크고, 제출받아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능률이 저하되는 등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각종 신고·확인·허가 서류, 장부의 기록 및 유지, 발생·처리·재활용 보고서 등을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함.

(3) 폐기물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제출하지 아니하고 간편하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사업자의 업무부담이 완화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됨.

나. 재활용신고자의 과징금 처분 금액 등(안 제23조의3과 제23조의4)

(1) 현행은 재활용신고자의 경우 부적정한 관리로





인한 방치폐기물의 발생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처분과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규정이 법률로 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과 사용용도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2)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규정하고 그 사용용도를 정함.
- (3) 재활용신고자가 받은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금액 및 사용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재량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환경부공고 제2008-5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인계·인수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신고사항과 수입한 폐기물의 인계·인수 사항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투명한 수출입 폐기물 관리를 도모하고,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 등을 신설하여 관리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613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안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81조)
- 나.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 및 인계·인수(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신설)

◎환경부공고 제2008-46호

「수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량행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을 대통령령에 정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시험 실시 업무를 전문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820호, 2007.12.27)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도법 시행령에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 신설(안 제58조의2)
-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권한을 한 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안 제67조제4항)

◎환경부공고 제2008-47호

「수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법 개정법률안 모음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업무를 전문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820호, 2007.12.27)됨에 따라 동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권한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하도록 하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과 같이 환경부장관이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관리(안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환경부공고 제2008-40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의 지정기준의 일부를 변경하여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에 일치시키고 시험자료의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제한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의 지정기준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맞추어 일부 변경(안 제2조 별표1)

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없이 유해성심사가 면제되거나 면제확인을 받아 유해성심사가 면제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대상을 확대(안 제9조)

다. 신규화학물질 이외에 유해성심사가 필요한 화학물질의 범위를 일부 삭제 및 구체화함(안 제11조).

라.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면제 대상 축소 및 취급금지물질의 수입 및 영업허가 면제를 폐지(안 제20조, 제21조)

마.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의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5년간 2회로 제한(안 제28조)

◎환경부공고 제2008-41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항목의 확대와 유독물 취급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성적서의 수를 6개에서 9개로 확대(안 제5조)

나. 경제협력개발기구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확인하는 외국시험기관의 범위 신설(안 제5조제3항)

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시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 확대(안 제6조)

라. 유독물 취급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의 세분화 및 구체화(안 제17조 별표1 및 제24조 별표2)

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허가 대상의 확대(안 제19조 및 제34조)

바. 취급금지물질인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이외에 취급금지물질의 수입 또는 영업허가제 폐지(안 제32조 및 제34조)

사. 화학물질 정보 및 목록의 제공내용의 구체화(안 제40조 및 제40조의2)

아. 유독물의 단일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크기를 통일화(안 제28조 별표4)

◎환경부공고 제2008-35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사항 중 변경신고 대상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에 정하도록 「수도법」이 일부개정(법

률 제8820호, '07.12.27)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환경부령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대상을 신설(안 제5조 제2항)

나.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절차 및 신고기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5조제3항)

◎환경부공고 제2008-33호

악취방지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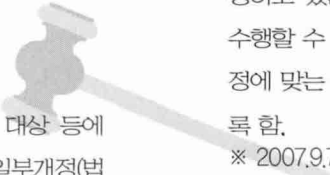
1. 개정이유

- '05. 2. 10일 악취방지법 시행이후 악취배출시설 관리업무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미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관리강화 등 효율적인 악취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상기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2007.12.21~ 2008.1.17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 완료함.

- 현행 악취방지법에서 시·도지사의 소관업무로 정하고 있는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악취저감대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2007.9.7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시·도 소관 악취



환경법 개정법률안 모음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키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재입법 예고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규정(안 제6조제2항 신설)

- (1)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함에도 집값하락 등 지역 여건을 이유로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지연하는 사례 발생 우려
- (2) 시·도지사가 지역여건 등을 사유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소극적인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권고 할 수 있도록 함.
- (3)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악취관리대책 추진 가능

나.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6조의2 신설)

- (1)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정비
- (2) 당초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악취관리지역 해제규제 근거를 명확히 함.
- (3)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던 악취관리지역내 신고 의무화, 엄격 배출허용기준 등 강화된 규제 적용으로 인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경감

다. 악취관리지역밖의 주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화(안 제8조제1항 개정)

- (1) 악취관리지역밖의 축산시설 등 주요시설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악취관리대책 필요
- (2) 신고의무가 없는 악취관리지역밖의 축산시설, 학교 등 공공시설 주변 주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설치신고를 의무화 함.
- (3) 악취발생 및 민원이 많은 주요시설과 학교 등 공

공시설 주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라.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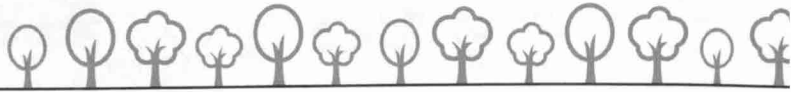
- (1) 동일한 사업장 또는 인접한 사업장에서 악취저감시설을 각각 설치토록 규정하여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투자 비용 증가
- (2) 동일한 사업장 또는 인접한 사업장에서 공동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 (3) 2개 이상의 악취배출사업장에서 공동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경감

마. 학교 등 공공시설 주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규정(안 제15조 신설)

- (1) 학교 등 공공시설 주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환경피해 민감계층의 생활악취 피해대책의 필요성 제기
- (2) 주요 공공시설 주변지역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 (3) 쾌적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학교 등 공공시설 주변지역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피해 민감계층의 건강보호 강화

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의무화 규정(안 제16조의2 신설)

- (1) 처리공정상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관리 강화 필요
- (2) 하수·폐수·분뇨·축산분뇨처리시설 등 악취발생이 많은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 악취기술진단을 의무화 함.
- (3) 공공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운영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 배출허용기준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시 법적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8조제2항 단서조항 개정)

- (1) 악취가 항상 법적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에도 악취방지계획 등 법적 구비서류를 일괄 제출토록 규정
- (2) 공정 특성상 항상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악취배출시설 신고시 악취방지계획 등 법적 구비서류 제출을 면제
- (3) 악취배출사업장의 불필요한 법적 구비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행정적인 부담 경감

아. 경매 등으로 악취배출시설을 인수한 경우 신고 등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규정 신설(안 제9조제2항 신설)

- (1) 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경매 등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신고를 득한 배출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권리 승계 규정이 없어 악취배출시설을 인수한 사업자가 새로이 신고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 발생
-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기존 악취배출시설 신고사항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함.
※ 대기·수질환경보전법에는 경매 등에 의해 인수한 자의 승계규정을 두고 있음.
- (3)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경우 새로이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중복 규제 완화

자. 악취발생물질의 부정적 소각금지 규정 삭제(제15조 삭제)

- (1) 악취발생물질을 불법소각 금지행위에 대하여 악취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에서 중복으로 규제하고 있어 적용법규 혼란 발생
- (2) 악취방지법에서 정하는 악취발생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폐기물에 해당되어 별도 규제가 가능하므로 악취물질 불법 소각시 악취방지법에서 규제토록 하는 규정 삭제
- (3)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르게 적용되던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삭제함으로써 법령 해석 또는 집행상 혼란 예방

차. 악취실태조사는 악취검사기관에서 실시(안 제4조제4항 신설)

- (1) 악취관리지역 등 악취실태조사 조사기관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 발생
- (2) 악취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적합한 조사기관을 명확히 명시
- (3)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을 위한 악취실태조사시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

카. 시·도지사 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련 업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에 관한 악취사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1) 현행 악취방지법에서 시·도지사의 소관업무로 규정된 악취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지방이양추진위원회 결정, 2007.9.7).
- (2)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 자체적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련 업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3) 악취관리능력을 갖춘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악취관리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악취저감효과가 기대됨.

